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유연화 등 특구법 개정완료('21.06.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그 간 정책 연구용역, 관련 정책 시행, 특구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 및 특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구육성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실행력 미비함에 따라 매년 특구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나.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요청 절차 및 고시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권(사업시행자) 및 요청권(시·도지사)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요청 절차 및 관계서류 등 신설함.

2) 법에서는 특구 지정·변경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상 특구 지정·변경과 특구개발계획을 동시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운영상 혼선이 있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계획 수립기간 3년을 보장하고자 함.

다. 연구소기업 설립 지분을 일원화 및 최저기준 완화(안 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 기준을 자본금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일원화하고,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함.”

라.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 제29조)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응되는 토지용도구역이 없어 특구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 신설하여 특구 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복합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구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주거·상업·녹지구역의 허용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되 일부 유해용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2) 특구의 핵심기능이 밀집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교육·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 기업의 복합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에서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특구에 포함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등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토록 하고, 실시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규정을 따르도록 함.

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변경(안 제32조~36조)
“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입주승인, 양도승인을 받던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사. 산업시설구역 관리 관련규정 정비(안 제36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규정함.

2)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가지 계획이 공존하여 관리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

므로, 특구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한해*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을 준용토록 명시하여 2개 계획 간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6조의2제5항”을 “법 제6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여부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을 “제13조제5항”으로, “투자”를 “등 투자”로,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시설”로 한다.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3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공공시설구역 : 별표 7의4에서 정하는 건축물

제32조의 제목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을 “(입주계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승인을 받으려”를 “입주계약을 하려”로, “입주승인신청서”를 “입주계약신청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관리기관”으로, “입주승인 신청을”을 “입주계약 신청을”로, “입주승인 신청인”을 “입주계약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을”을 “입주계약을 체결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관리기관”으로, “변경을 승인”을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양도승인신청서”를 “양도신고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관리기관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업의 특례)”를 “(입주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업의 특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를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주승인 취소”를 “입주계약 해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후단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제5조제1항2호에 따른 특구지정 이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특구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단,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
시술소 및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
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단,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
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
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

각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별표 6 제4호 중 “제32조제2호”를 “제3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진흥재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진흥재단 또는 제32조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식산업센터(분양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2. 별도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 한정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별표 7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

용에 따른다.

2. 별도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별표 7 제5호는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의3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용에 따른다.

2. 별도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별표7 제2호와 별표7의2 제2호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승인을 얻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산업공공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10호 관련)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그 계획내 용에 따른다.
2. 별도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② (생략) <u><신설></u>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구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 기 위해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 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략) <u><신설></u>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여부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u>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확정
된 특구개발계획의 법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7항(법 제4조
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시와 동
시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퍼센트
2.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6항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6조의2제7항-----

-----<후단 삭제>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3.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⑥ (생략)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

----- 제13조제5항-----
----- 등 투자-----
----- 5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① -----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생략)

2. 산업시설구역

가. ~ 다. (생략)

<신설>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
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면
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 9. (생략)

<신설>

② (생략)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
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생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 산업
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
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

----- 산업시설 -----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산업공공시설구역 : 별표 7
의4에서 정하는 건축물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
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현행

략)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 같음)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① ----
----- 입주계약을 하려-----

---- 입주계약신청서-----

----- 관리기관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
----- 입주계약 신청을
----- 입주계약 신청인-----

-----.

③ -----

-----.

1. 입주계약을 체결할 -----

2. ~ 5.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5조(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생략)

제36조(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

2. ~ 5.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

-----.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 -----

----- 양도신고서-----

----- 관리기관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주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

1. 입주계약 해지-----

<u>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u> <u>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u> <u>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u> <u>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u> <u>인</u>	<u><삭 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4